

97.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년 4월 21일(부천시장)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4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(97년 5월 3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충식)

가. 제안이유

- 97.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.(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규정)

나. 주요골자

97.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요구함.

- 자금명 :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
- 지급보증금액 : 123백만원

-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역곡1동 157-37번지 이용철 외 15인
 총 16가구(원미구 7가구, 소사구 5가구, 오정구 4가구)
- 용자금 지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 부천남지점 등)
- 상환방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 상환
- 이 율 : 연리 3%
- 지급보증기간 : 2년간(단, 전세계약을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전문위원 : 최인용)

- 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중 부천시로 배정한 97.영세민전세자금 123백만원을 관내 주택은행을 통한 용자 시 용자금의 결손보전을 위한 부천시의 보증채무를 부천시의회 의 의결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.
-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, 지방재정법 제10조 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내용에 이상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용자규모가 작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?	○ 작년에 3억을 배정받아 용자를 실시하여 올해 4억을 신청했으나 123백만원을 배정받았음.
○ 용자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용의는?	○ 경기도 지침에 의하여 대상자선정기준지침이 있어 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임.
○ 부천시가 용자 채무를 변상한 예는?	○ 동 사업을 91년부터 시행했으나 채무를 변상한 예는 없음.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97.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

의안번호	제250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4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97.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은행과 부천시의 협약내용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산을 보전코자 할 경우를 대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코자 함.(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)

2. 주요골자

97.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다음과 같이 승인함.

가. 자금명 :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

나. 지급보증금액 : 123백만원

다. 지급보증대상자 : 원미구 역곡1동 157-37번지 이용철 외 15인

총 16가구(원미구 7가구, 소사구 5가구, 오정구 4가구)

라 융자금 지급 : 한국주택은행(부천지점, 역곡지점, 원종지점, 심곡지점, 고강지점, 소사지점,

부천남지점 등)

마. 상환방법 : 2년 이내 전액 일시 상환

바. 이 율 : 연리 3%

사. 지급보증기간 : 2년간(단, 전세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신청자 1회 연장가능)

3. 제안본문

제 목 : 97.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 승인

가. 목 적

- 도시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코자 함

나. 지원방법

- 융자지원 규모 : 123백만원(97. 부천시 1차 배정액)

(※ 재원 :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)

○ 융자대상

-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 중
- 전세금 2,000만원 이하(융자금 포함 2,750만원 이하)인 전세입자

○ 가구당 지원액 : 750만원 한도 내

○ 대출금리 : 연리3%(본인부담)

○ 상환조건

- 2년 이내 일시상환(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
- 자금관리 :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 관리

○ 구별 자금 배분액

구 분	배 정 액
계	123,000천원
원 미 구	55,500천원
소 사 구	37,500천원
오 정 구	30,000천원

다. 융자실시 방법

- 융자업무 취급기관 : 주택은행부천지점 외 9개 점포
- 시행일정
 - 신청접수 : 97. 2. 12.~2. 24.(각 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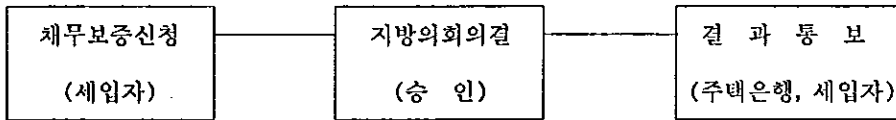
- 개별실태조사 : 97. 2. 12.~2. 24.(각 동)
-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: 97. 3. 3. 까지(각 구청)
- 지방의회의결 : 보증채무승인행위 승인
- 대상자 통보 : 의회 의결 후
- 용자실시 : 97. 4월~9월

○ 용자계약 체결

- 계약당사자 : 지원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
- 보증인 :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에 용자신청
-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체적 보증

라. 채무이행 보증절차

○ 근거규정 : 지방제정법시행령 제21조



○ 채무보증 내용

- 전세자금 용자금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손보존문제가 발생될 경우로서
-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회수가능여부를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 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후
-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
- 부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

마. 기타사항

-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용자금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,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
-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용자금 및 이자납입상환실태,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